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가이드 북

2009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yeoyeon.cyworld.com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가이드 북>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yeoyeon.cyworld.com

목차

㉠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성폭력이란?	2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2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3
-주의사항	
(1) '동의'의 여부	4
(2) 피해자 중심주의	5
(3) 2차 가해	5
(4) 사건 해결	6
㉡ 성폭력 사건 예방과 대처	
-새터/MT 에서의 공간분리	7
-밤거리 성추행, 스토킹 피해.....	8
-언어 성폭력	8
-술자리에서의 성폭력	8
㉢ 성폭력 피해자 혹은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9

④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적 자율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모든 생각과 행위에 대한 권리다. 때문에 강간이나 심한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인 표현으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소집할 수 있다: 피해자,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의 대변인, 가해자, 가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대변인, 사건 당사자가 속해있는 생활공동체의 장(반 회장, 학회장), 여성주체, 단

과대 학생회장, 단과대 여성주체 혹은 그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자(여성국장, 성평등국장)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자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신의 경험을 검열하기 쉽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들은 피해자의 말은 진정성있게 듣고, 피해자의 경험을 신뢰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분노의 표출과 그에 대한 공감만으로도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

사건 해결 주체는 전문적인 상담가가 아님을 지지해야 한다. 언제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즉시 학내 성폭력 상담실이나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사건 처리 과정

① 피해자가 사건 처리를 원할 경우,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확보한다.

② 비대위를 통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대위를 소집한다.

③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를 확보한다.

④ 비대위 회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건 처리 방향을 조율하고 결정한다.

⑤ 필요할 경우, 층여학생회, 학내 성폭력상담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다.

※ 위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는 피해자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에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의사항

(1) '동의'의 여부

많은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학번, 나이, 성별, 지위 등의 권력관계가 있을 때에 피해자는 성폭력적 상황에 명확한 거부의를 표현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때에 피해자는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중심주의

흔히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의도와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재단하였을 때에 각기 다른 피해자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즉 피해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2차 가해

2차 가해란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피해자의 피해 경험을

자의적으로 폄하하는 것,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것 등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남기에 2차 가해로 규정한다.

(4) 사건 해결

사건 해결 주체는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의 피해자 혹은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격리, 공동체 내부의 공론화와 반성폭력에 대한 환기, 가해자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협의하되, 피해자에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건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처리 과정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 내용을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

한 채 뜯소문으로만 퍼질 경우, 피해자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 그에 따른 반성폭력에 대한 반감이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무조건 공론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만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성폭력을 일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오해하도록 한다. 성폭력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해야 한다.

④ 성폭력 사건 예방과 대처

성폭력 사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85%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며,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터/MT

매년 새터나 MT와 같은 자리에서 물리적 성

폭력의 빈도가 높다. 1차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공간분리를 해야 한다.

-밤거리 성추행, 스토킹 피해

이러한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피해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즐긴다. 위축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가해자가 공격하기 어려운 상대로 만드는 것이 좋다. 소리지르기, 몸이 커보이는 동작 취하기, 격투기와 같은 몸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신고할 수 있는 상황에는 언제나 신고한다.

- 언어 성폭력

언어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발언을 막고, 공동체 구성원의 지지를 끌어내도록 노력한다.

-술자리에서의 스킨쉽

거부의사를 표하기 어려운 이들이 성폭력적 상황에 처해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술자리를 체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자리배치를 바꾸거나 가해자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④ 성폭력 피해자 혹은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총여학생회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

woolim@yonsei.ac.kr / 02) 2123-3645

■ 교내 성폭력상담실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 : helper@yonsei.ac.kr / 02) 2123-2118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 338-5801~2 /

ksvrc@sisters.or.kr / <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민우회 : 02) 739-8858 /

minwoo@womenlink.or.kr /

<http://www.womenlink.or.kr>